

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송파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빈집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이 제정(2017.2.8.)되어 시행됨(2018.2.9.)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□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,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현행 변경 허용기준,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, 문

화재위원회 심의 등 다수의 규제가 적용되어 신축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- 이에 시·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낙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